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 보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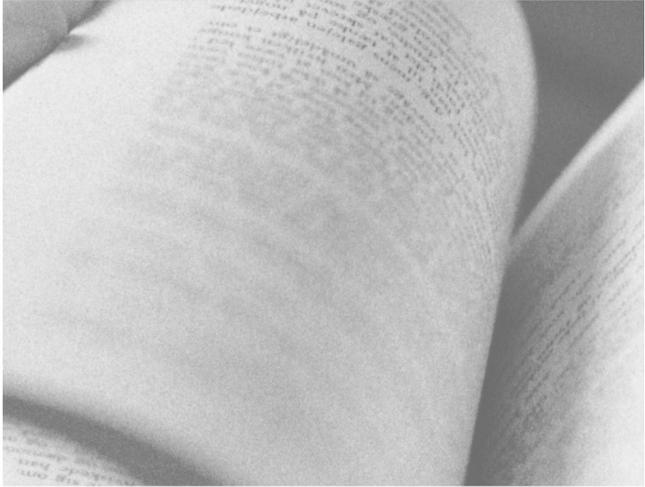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 보 혁



통일연구원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인 쇄 2006년 12월
발 행 200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서보혁.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6-06)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61-2 93340 : 비매품
342.10911-KDC4
323.095193-DDC21

CIP2006002672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 보 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국제인권론	5
가. 국제인권원리	5
나. 인권의 범주	6
2. 상호관계론	8
가. 인권과 평화	8
나. 인권과 발전	9
다. 인권과 민주주의	11
III. 국내의 동향 변화	13
1. 한국내 동향	13
가. 시각 차이	13
나. 정책 대립	17
다. 새로운 접근	20
2. 국제적 동향	23
가. 유엔의 두 가지 접근	23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26
다. 비정부기구의 목소리	30
IV.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과제	35
1. 한국의 위치와 한국정부의 입장	35
2.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38
3.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	42
가. 정책결정의 측면	42

나. 정책집행의 측면 47

V.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51

1. 기본 구도	51
2. 추진 원칙	53
가. 국제인권 원리 준수	53
나. 인권과 평화의 조화	54
다. 실질적인 인권개선	54
라.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55
3.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55
가. 남한	55
나. 미국과 일본	56
다. 중국	56
라. 유럽연합	57
마. 유엔 인권기구	57
바. 비정부기구	58
4. 단계별 추진전략	58
가. I 단계 추진전략	59
나. II 단계 추진전략	60
다. III 단계 추진전략	61
라. IV 단계 추진전략	62

VI. 결론 65

참고문헌 69

표목차

<표 III-1> 북한인권관련 한국사회의 여론상	14
<표 III-2> 한국의 보수-진보 진영의 북한관련 입장 비교	16
<표 IV-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각 행위자별 역할(예시)	45
<표 V-1>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59

I 서론

북한인권 논의는 인권 상황, 관련 행위자들의 동향, 인권 개선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일반적 평가를 전제하고 나머지 두 가지 측면을 주 논의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우려가 대단히 높지만 북한인권 상황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날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회자되는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북한인권 논의가 어떤 관점과 범주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한 평가 기준이 요구되는바, 국제인권론을 그 전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행위자들의 동향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유엔 인권기구의 위상 변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그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의 북한인권운동 활성화, 비판폭로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 논의의 추가, 국제사회와의 연대활동 증대 그리고 대선국면 도래 등으로 북한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함께 여론 분열 현상이 동시에 발견된다. 그에 따라 정부의 기존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논란도 예상된다. 여기서 한국의 기존 북한인권정책의 재검토 및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수립과 같이 체계적인 북한인권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문제의식이 생긴다.

본 연구는 이상을 배경으로 국내외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관련 동향의 특징과 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과제를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포괄접근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국제인권에 관한 이론을 국제인권 원리, 인권의 범주 등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를 북한인권 동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또 인권 외의 다른 주요 가치들이 인권과 갖는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동향을 그 특징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동향은 주로 정당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에는 유엔의 관련 논의, 미국과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정책, 국제인권단체의 북한인권운동이 포함될 것이다.

IV장에서는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을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두 차원에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효과성의 측면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 최소화를 겨냥한 능률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V장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포괄접근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여 단계별 목표와 행위자별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효과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본문에서는 북한인권관련 한국정부 및 국내외 관련 기구의 일차자료, 선행 연구 성과, 언론보도 등 기타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개최된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로 한정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인권론

가. 국제인권원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인권해설집 중 국제인권장전 편에서는 국제인권장전을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그리고 이 두 규약의 선택의정서 등으로 꼽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서문과 제2조를 통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¹ 인권의 보편성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진영의 계급중심

¹ 세계인권선언 서문에서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그리고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그 밖의 견해,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적 시각과 제3세계 국가들로의 상대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도전을 받아 왔으나 국제인권의 제1원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1968년 테헤란과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두 차례의 세계인권대회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은 재확인되었다. 국제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역시 오래전부터 국제인권원리로 부각되었다. 1950년 유엔 총회는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향유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의 향유는 상호연관성이 있고 상호의존적이다”(결의안 421(V), E)라고 선언하였다. 비록 합의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인권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총체적이라는 점도 국제인권원리의 하나가 되었다. 요컨대 국제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4개 원리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제5항에서 채택되었고 이 선언은 같은 해 제48차 유엔 총회 결의안 48/121로 승인되었다.²

나. 인권의 범주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채택 및 발효³로 인권의 범주는 이 두 규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확대·발전해왔다.

인권의 범주, 특히 중심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의 역시 인권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생명권,

과정과 그 의미는 Paul G. Laure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pp. 199~232 참조.

²-“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CONF.157/23, 12 July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4-25 1993, Vienna, Austria, UNHCHR.

³-두 규약은 1966년에 채택되었으나, 발효는 35번째 비준서 및 가입신청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지 3개월 후에 이루어진다는 규정에 따라 1976년에 가서 각각 발효되었다.

신체의 자유, 노예상태 및 강제노동 금지,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금지, 거주이전 및 주거 선택의 자유, 법 앞의 평등한 대우, 형법의 소급 적용 금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공무 참여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근로권,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의 권리, 문화생활 영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⁴ 자유권과 사회권 가운데 인간의 삶에 바탕이 되는 생명, 안전, 생존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basic rights)이라고 하고, 여성 및 아동의 권리는 자유권이나 사회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인권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인권의 주요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196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 2세대의 인권 논의가 냉전시대 동서 양진영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하여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3세대 인권은 제3세계 약소국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 3세대 인권에는 자결권, 발전권, 문화적 다양성 존중, 평화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3세대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기반하여 인권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 물론 자유권과 사회권은 둘 다 세계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사회권은 의정서 초안)로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을 담고 있는 관련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자유권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이 국가, 계급같은 집단보다는 개인 중심의 접근이 지배적이라는 점도 국제사회에서 서방의 개인주의적 자유권의 우세를 말해주고 있다.

2. 상호관계론

오늘날 인권이 보편성을 획득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관심사들도 많기 때문에, 인권은 다른 주요 관심사와 조화를 이룰 때 인권의 실효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가. 인권과 평화

평화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여건이란 개념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나타났다. 1968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테헤란선언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염원이고, 평화와 정의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전면 실현에 필수적임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평화가 하나의 권리라는 인식은 1981년 ‘인간 및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제23조⁵⁾와 1984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평화롭게 살 인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n Right of Peoples to Peace)’에 반영되었다. 1984년 평화권 선언은 전쟁 특히 핵전쟁 위협의 제거, 무력사용 중단,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이 평화권 실행을 위해 요청된다고 밝히고 있다.

평화권은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세상에 살 권리로 정의되는데 갈등의 발생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원인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발전시킬 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권은 특정한 상황에

5- 제23조 1절은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전의 권리를 갖고 연대와 우호관계는 국가관계의 원칙임을 밝히고, 2절에서는 피난민이 모국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전복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 영토가 전복, 테러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 무력과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절대적 평화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⁶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권한대행을 한 램차란(B. Ramcharan)은 평화조성(peace-making)은 반드시 인권의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하고 평화유지 및 평화수립(peace-building)은 반드시 인권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⁷

북한인권 논의 범주에서도 평화는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주요 권리의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는바,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대북(핵)공격 위협이나 북한의 핵실험 모두 북한인권 개선에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⁸

나. 인권과 발전

저발전국에 있어서 인권은 빈곤퇴치를 비롯한 사회발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운동과 유엔 진출을 배경으로 발전의 문제는 ‘남북문제’로 불리면서 1970년대부터 국제정치 경제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198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발전권 선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 선언은 발전권이 “박탈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그들(개발도상국: 필자주)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시설의 제공에 있어 효과적인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제4조 2항)고 밝혔다. 1993년 비엔나 선언 제1조 10항도

⁶-Patrick Hayden, “Constraining War: Human Security and the Human Right to Peace,” *Human Rights Review*, vol. 6, no. 1 (October-December 2004), pp. 43~44.

⁷-Bertrand G. Ramcharan,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p. 13.

⁸-이에 대한 인권단체의 균형적 시각으로는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2006년 10월 11일.

“발전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근본적인 인권의 통합적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 발전권 선언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균비축소법에 따라 양도된 자원이 포괄적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발전권 논의의 특징은 첫째, 그것이 집단권 혹은 연대 권리의 대표적 사례이고, 둘째 자유권과 사회권과 같이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를 연계하고, 셋째 개도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의무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개발권 선언은 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에 준거가 되지만 균축, 여성 및 소수자 집단의 권리 등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⁹ 발전권은 정치적으로 약하고 내적으로 모순적이고 의무를 만들어낼 당사자가 모호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고,¹⁰ 어떠한 실질적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¹¹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¹²과 유엔이 제시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¹³와 인권의 상호결합 등이 제시되고 있다.¹⁴

⁹-Peter Uvi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2004), pp. 42~43.

¹⁰-Isabella D. Bunn, “The Rights to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Economic Law,”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5, no. 6 (2000), pp. 1425, 1435.

¹¹-Allan Rosas, “The Right to Development,” in Asbjorn Eide, Catarina Krause, and Allan Rosas (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Textbook*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95), pp. 247~256.

¹²-Philip Alston and Mary Robinson(ed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s Mutual Reinforce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eter Uvi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¹³-2000년 유엔 총회에서 ‘새천년 선언’을 하면서 2015년을 목표로 다음 8가지 과제 달성을 선포하였다. ① 극빈곤 및 기아 해소,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성평등 증진 및 여성 권리 증진, ④아동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 건강 증진, ⑥HIV/AIDS 퇴치, ⑦지속 가능성 보장, ⑧개발을 위한 세계적 동반자관계 발전. <<http://www.un.org/millenniumgoals>> (검색일: 2006. 9. 15).

¹⁴-Philip Alston,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발전권의 측면에서 북한인권을 생각할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논리는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북한정부의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것과 인권을 자유권으로 한정하여 발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다. 인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시 인권 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민들의 의지가 정부 권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서도 공공 행정에 참여할 개인의 권리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냉전시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감성이 높았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 지은 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진행되었다. 1988년 유엔 총회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 원리의 효과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를 위해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9년 관련 결의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의 권리를 8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¹⁵

민주주의와 인권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상호연관성 및 상호의존성을 갖는다. 첫째 인권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민주사회의 본질적 특성이고, 둘째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은 자유, 권리, 의무의 발전을 통해 구체화되거나 재구성되고, 셋째 인권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상호 강화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7 (2005), pp. 755~829.

¹⁵-①의사표현, 사상, 양심, 종교 등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②정보 습득 및 추구에 관한 자유, ③법치, ④보편적이고 균등한 투표권, ⑤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의 권리, ⑥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기구, ⑦정부체제에 대한 선택권, ⑧공공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권 등을 말한다. “Promotion of the right to democracy,”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57, E/CN.4/RES/1999/57, 28/04/1999.

한다.¹⁶ 민주주의는 또한 발전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권리에 기반한 발전은 민중들의 권리 실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정당성 실현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접근은 법적 접근을 초월하여 사회정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¹⁷ 1993년 빈 세계 인권대회는 민주주의, 발전, 인권 존중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강화한다고 결론짓고 일국적, 국제적 행동이 이 셋을 증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북한인권을 논할 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등치시켜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능력과 의지를 무시하는 접근이나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 모두 잘못된 것이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유엔이 밝히는 민주주의 요소를 확립하는 것이 인권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¹⁶-Shadrack Gutto, "Current concepts, core principles, dimensions, processes and institutions of democracy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odern human rights," Seminar on the Interdependence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ld by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25-26 November, 2002, pp. 2~3.

¹⁷-Peter Uvi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p. 176.



III

국내외 동향 변화

1. 한국내 동향

가. 시각 차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 관련 문제와 함께 국내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견해¹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겠다.¹⁹

¹⁸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스펙트럼은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시민단체에서 보수적 견해는 ‘북한민주화’ 혹은 ‘북한인권’을 단체명에 표방하는 단체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진보적 견해는 주로 평화통일운동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¹⁹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금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발표문 (서울, 2006. 7. 11); 윤여상, “북한인권운동과 우리의 성찰,” 『황해문화』, 통권50호 (2006 봄), pp. 324~335; 김정미,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사회의 논의 동향 비평,” 『신진보연대』, 통권2호 (2006 봄), pp. 210~231; 서보희, “북한 인권의 이해와 해법,”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정치학이란』 (서울: 인간사랑, 2005), pp. 393~411; 이금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표 III-1> 북한인권관련 한국사회의 여론상

구분	보수적 견해	중도적 견해	진보적 견해
입장	적극적 문제제기	문제제기	신중 혹은 유보
상황 인식	대단히 열악함	열악함	판단 유보
평가기준	보편성	보편성	상대성
주요 원인	북한 정치체제, 경제난	절충	미국의 봉쇄, 경제난
주관심사	자유권	절충	생존권, 평화
북한인권법	지지	유보	반대
주요 개선방안	한국정부 포함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	비판과 지원 병행	국제사회 건설적 역할, 한국 간접적 접근
지향	북한정권 교체	인권개선	평화공존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 관련 한국사회의 여론은 진보적 견해 대 보수적 견해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이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은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 견해는 북한인권 관련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는 한국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 이런 판단은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보수적 견해에서는 오늘날 북한체제가 전반적으로 열악해진 원인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보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극심한 경제난이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보수적 견해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탈북자 수용을 한국정부가 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인권개선책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보수적 견해는 북한주민의 인권 중 자유권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강제송환 중단 등 경제

사회의 인식과 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서울, 2004. 12. 1).

난 이후 양산된 탈북자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인권 개선은 사건별 대응으로는 개선이 요원하므로 오히려 북한정권의 교체를 통한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수적 견해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에 비해 진보적 견해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알려진 정보의 신빙성 문제와 직접 확인의 어려움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은 인정하지만 비판과 제재 일변도의 압력에는 반대하고, 특히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원, 교류협력 등과 같은 방법이 유용하다고 본다. 진보적 견해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당면한 생존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북한 인권상황의 일차적 원인이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과 경제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보적 견해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북한인권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진보적 견해는 인권의 보편성이 북한인권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때 나타날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남북한 평화공존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인권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도적 견해는 뚜렷한 보수적, 진보적 견해에 비해 명확한 입장을 발 견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중도적 견해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담론 형성 및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적 견해는 대체로 북한인권 상황의 열악함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과 의견이 가깝지만, 북한정권 교체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실용적 접근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진보적 견해에 가까워 전체적으로 절충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정

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중도적 견해가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다가올 정치적 일정 외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이 북한인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대북인식, 북한체제에 대한 전망,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등 광범위한 입장 차이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보수적 견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전망,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이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할 것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주장한다. 반면, 진보적 견해는 객관적 실체로서 북한체제 인정, 북한체제의 내구력 인정 및 평화공존의 필요성,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여 현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제기하면서 소위 역할분담론의 입장에 서있다(표 III-2 참조).

<표 III-2> 한국의 보수-진보 진영의 북한관련 입장 비교

구분	보수진영	진보진영
대북 인식	부정적	긍정적
북한체제 전망	비관적	신중 혹은 낙관적
정부 대북정책	비관적	긍정적
북한인권정책	적극적	소극적

나. 정책 대립

북한인권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갈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5년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세 번째로 통과되자 정치권은 또 한 번의 입장 대립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4월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투표 결정은 한반도 특수상황 속에서 고심 끝에 나온 결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다음날 ‘남북자 및 남북자 인권특별위원회’ 명의로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②북한주민의 인권증진 지원법 제정, ③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 ④남북자 귀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⑤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날’ 기념일 지정 추진 등 북한인권 개선 5개항을 발표하였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또 2005년 12월 5~11일 서울에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와 국내 보수성향의 일부 북한인권단체가 미 국무부의 후원을 받아 공동주최한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즈음하여 입장 차이를 보였다. 12월 9일 임채정 등 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생존권 지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강구 등 5개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대회에 참석한 정의용 의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것이었으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여당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은 2006년 5월 4일,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지원 검증시스템 구축, 남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5개항을 발표하였다.

군소야당 사이에서도 입장이 개진되어 왔으나 여당과 제1야당만큼

적극적인 양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이 없으나 당 기관지를 통해 ‘북한인권국 제대회’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이용될 수 있고, ‘호화판’ 행사라는 점을 들어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03년 4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은 쉽사리 통일되기 어려워 보인다. 2004년 봄, 진보진영의 일부 단체들은 가칭 ‘한반도 인권회의’를 만들어 미국의 북한자유화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같은 해 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전달할 북한인권관련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권회의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 당시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지하고 탈북자 입국에 관여하였고, 극히 일부 단체는 소위 ‘기획탈북’에도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간에 ‘좋은벗들’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병행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2005년 들어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진보-보수진영은 대립을 표출한다. 2005년 4월 14일, 진보성향의 24개 시민단체들은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진보진영의 입장이 선명히 부각되어 있다. 성명서는 “우리는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내용 역시 편향적인데다가,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윤리성을 비판해왔다. …… 또한 북 체제 붕괴를 재촉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정과 무력

사용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NGO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²⁰ 이와 달리 같은 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자유주의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1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과정은 인권변호사에서 출발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인간적 양심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찬성 표결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인권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대립은 12월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놓고 다시 나타났다. 12월 5일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등 진보진영은 “이번 대회는 친미수구세력들이 총결집하여 한국 사회에 반복여론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하고 이어 규탄행사와 집회를 벌였다. 이에 대해 대회를 공동주최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은 12월 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국제대회에 대한 방해책동을 계획하는 친북좌파적이며 수구적 독재협력적인 불순세력들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수진영은 북한의 정치수용소, 종교의 자유, 탈북자 강제송환 등 자유권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진보진영은 북한의 식량 부족, 한반도 평화정착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탈북자의 미국행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보진영에서는 그것이 탈북자의 정착에 도움을 줄지 의문을 표시하고 나아가 그것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²⁰- 인권운동사랑방 웹사이트 <<http://sarangbang.or.kr>> (검색일: 2006. 9. 2).

다. 새로운 접근

이와 같이 진보-보수진영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시민사회 내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되기는 이르지만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일말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먼저, 진보진영은 그동안 북한인권 상황 파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현지 탈북자 면담 등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이나 객관적인 실태파악 노력으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이 이 문제에 대한 단체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진보-보수를 초월한 공동 조사사업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이 북한인권을 자유권에 치중하여 다루며 북한정권 비판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건설적’ 대안으로 북한의 에너지 부족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탈북자를 이주노동자로 파악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진 바 있다.²¹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압력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인권개선의 대안 모색에 나설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06년 5월 9~11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개최한 제7회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를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시민연합은 1999년부터 이 회의를 한국, 일본, 유럽 각지에서 개최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²¹-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인권단체 주최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 워크숍 자료집 (서울 분도빌딩, 2005. 11. 30).



알리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는 데 크게 관여하였다. 그동안 이 회의는 북한의 인권상황 폭로 및 북한당국 비판 위주로 이루어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제7회 회의는 그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고 있다 할 수 있다. 제7회 회의가 북한인권 개선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춘 점, 한국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및 유럽의 인사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가진 점 등이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²²

북한 인권이 다른 사안과 갖는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입장을 나누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2005~2006년 사이에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중도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북한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006년 5월 22일~6월 12일 북한인권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4회 개최하였는데 이때 다룬 주제가 북한인권과 개발원조, 탈북 여성, 민주화 등이었다. 유관단체인 평화재단은 2006년 7월 11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두 자리에는 국내 진보-보수진영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입장을 개진하였다.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2005년도 하반기에 ‘북한인권강좌’, 2006년 상반기에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각각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2005년 두 차례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세미나)도 북한인권관련 국내외 전문가, 시민단체간 의견 및 활동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²²-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외국의 일부 인권단체와 함께 향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을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서한 작성에 참여해 위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이와 달리 북한인권을 아시아지역 인권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논의도 있는데, 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직접적 문제제기로 발생할 북한의 반발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신생 아시아인권센터와 바스피아(Basket And Sponge Project in Asia: BASPIA)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단체는 인신매매, 개발지원과 같은 주제별 접근을 바탕으로 한 지역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인권도 그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내외 인도주의적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인권과 직접 관련있는 활동이나 그에 관한 공개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존권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 축산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걸쳐 개발지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²³

북한인권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북한인권 개선방안이 다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조사사업, ②단체간 주요 사업내용의 존중 및 역할분담, ③정치적 접근 대신 기능적 접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위에 소개한 새로운 현상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²³-예를 들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제1회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2005년 12월, 서울, 광주)와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 토론회(2005. 10. 25,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2. 국제적 동향

가. 유엔의 두 가지 접근

유엔에서 북한인권 논의는 유엔 현장기구와 조약기구 양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현장 기구에서는 1997~1998년 제49~50차 인권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3~2005년 제59~61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²⁴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서는 이전 결의에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삭제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이 요청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특별보고관의 임무 1년 연장과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을 제기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²⁵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점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도 인권위의 결의와 대동소이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 등 현장기구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안 상정 여부 및 결의안 채택 여부는 주로 회원국의 국력과 국가이익에 의해 영향 받는 일종의 권력 정치 양상을 띤다.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도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전제할 경우에도 결의문 내용은 자

²⁴-2006년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었고 10월 현재 이사회 조직 개편논의로 북한인권 등 국가별 인권상황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²⁵-“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RES/2005/11, 14/04/2005.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권 중심으로 다뤄지는 반면 생존권, 개발권, 평화권 등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국제인권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현장기구의 북한인권 결의문 내용에 기술협력, 인권대화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의문 전체의 기조와 결의문 채택과정의 정치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압력 위주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엔 조약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국들의 문제 해결을 기능적으로 모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장기구와 달리 정치성이 약하고 실용적 접근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규약위원회²⁶가 북한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밝히고 있는 최종견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진다. 지면관계상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북한의 제2차 사회권 보고서를 심의하고 11월 28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²⁷ 사회권위원회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정부와 인민들의 노력과 무상의료, 무상보통교육의 이행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먼저 평가하고 있다. 이어 사회권위원회는 17개 우려사항과 24개 권고사항을 밝히고 있다. 먼저 우려사항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헌법 제162조, ②국제인권협약 적용의 판례가 없고 협약이 국내법원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③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력 배치 제도, ④국내법

²⁶-북한은 2006년 9월 현재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²⁷-“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12/1/Add.95, 12/12/2003.

내에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우려에 비추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제안과 권고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국제원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국제협력활동에 참여할 것, ②개인청원 절차의 기능과 그 적용 판례를 제공할 것, ③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것, ④반차별 실현을 위한 국내법 재검토 및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등.

이 밖에도 유엔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기관으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현장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와 관련이 있어 북한의 협력 거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유엔 인권기구는 현장기구와 조약기구를 양축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구에서 상이한 북한인권 논의는 두 기구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인권위원회와 같은 현장기구는 북한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면서 북한에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는데 비하여, 국제인권규약위원회와 같은 조약기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는 해당 위원회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구체적인 개선 권고를 하는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그에 따라 북한은 총회, 인권위 등 현장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한편, 가입한 4개 국제인권규약위원회 등 조약기구에는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 해당 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존중과 같이 선별적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²⁸ 현장기구에서의 북한 인권

²⁸-김수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08~112 참조.

결의안 채택이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정책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세계의 인권 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대외정책 목표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과 같은 당면 대북정책 목표가 결합해 구체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작성·발표하는 것이 전자의 사례에 속한다면, 북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 행정부의 북한인권 상황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자유권이 주요 관심사를 이루고 있다.²⁹ 이 점은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여 국무부에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2005년 인권상황 보고서’상의 북한인권 상황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문의 논조와 유사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확인 사항을 언급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다.³⁰

²⁹-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5*,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State Department, March 8, 2006 참조.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협력관계가 두드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³¹ 북한인권법을 통해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자유권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생존권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한 군축 등에 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탈북자 지원에 대한 집중적 재정 배분 등을 놓고 볼 때 북한인권법이 북한정권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실제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 국무부 후원으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이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될 뿐 상황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³²

2006년 들어 미국은 기존의 소극적 탈북자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탈북자 체류국의 반대, 탈북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탈북자 수용은 “절박한 사유(a compelling reason)”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왔다.³³ 그런데 2006년 들어 레이코프위츠(J.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대북 인도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탈북자 수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⁴ 이런 가운데 미 지방법원에서 한국국적

30-힐(C. Hill), 버시바우(A. Vershbow) 등 전·현직 주한미대사도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미국이 수집한 북한인권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31-서보혁, “행위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2005), pp. 311~317.

32-*Seoul Summit: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2005); 김수암,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5-13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33-“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m,” Released by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11, 2005.

34-한국국적의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북한인권법 제302조 해석)을 둘러싸고 미국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13일.

의 탈북자(새터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고 미 행정부가 탈북자 체류국에 직접 가서 심사를 한 후 난민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 접근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폭로와 북한당국에 대한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식 방법을 주로 구사하고 있으며 그 지렛대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연계를 활용하고 있다.³⁵ 그러나 그런 접근이 북한정부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은 유럽연합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점은 안보중심의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조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대외정책에서 인권이 갖는 비중과 그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그리고 정책 수단 등에서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3세계의 발전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인권존중을 평화, 안보, 법치 등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역시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 왔다.³⁶

2000년 1월 북한과 이탈리아의 국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북한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 사이에 일련의 관계개선이 전개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전략’, ‘국가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인권존중을 남북대화, 비확산, 지역안정 등과 함께 주요 관심사에 포함시켰다.³⁷ 유럽연합의 이 같은 대북(인권)정책은 사회권을 인권 영역에 적극 포함하고

35- John Feffer, “To Link or Not to Link: The Human Rights Question in North Kore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l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Seoul 3 November 2005.

36-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2003), pp. 36~48.

37-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자료』 (서울, 2005).

있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원과 대화를 주정책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인권을 다른 정책영역과 연계하거나 그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엔 총회 및 인권위원회 회의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제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북한과의 인권대화 중단은 위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은 1998년 12월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정치대화에서 북한인권도 다루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위원회를 활용한 다자적 접근을 적극 구사하기 시작하였다.³⁸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요구가 북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결의안 상정 및 채택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유럽연합과의 인권 대화를 중단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주로 미국을 향한 것이었다. 북한인권 결의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다같이 지지하였지만 그 의미는 양측의 대북인권정책의 성격 차이로 볼 때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이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인권에 관한 양측의 정책적 비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인권문제보다는 핵문제 등 안보에 우선성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대외정책 전반에서 인권의 비중을 높이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인권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대화 재개에 나설 필요

³⁸ - 최의철,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91 ~ 95; Glyn Ford, “EU’s Policy on Human Rights in DPRK,”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l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Seoul 3 November 2005.

가 있는지도 모른다.

다. 비정부기구의 목소리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북한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런던 본부에 동북아담당 활동가를 두고 북한인권 상황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국제인권 보고서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것 외에 뚜렷한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³⁹ 국제사면위의 2005년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유권 침해를 거론하면서도 계속되는 식량난이 아동의 영양실조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식량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⁴⁰ 북한의 식량난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생존권과 자유권의 상대적 중요성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사면위원회는 식량난과 인권 상황의 상호 영향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생존권과 시민적 자유에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⁴¹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도 매년 세계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는데, 2005년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에 관하여 자유권과 사회

³⁹-국제사면위원회 동북아담당자는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6년 2월 15일 서울에서 필자와의 면담 내용.

⁴⁰-*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5* (Oxford: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5) pp. 151~153.

⁴¹-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AS 24/003/2004, 17 January 2004.

권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교육권, 근로권, 건강권 등 사회권에 있어서의 접근 제한과 차별 원인을 북한정부의 계급정책으로 환원하고 있다.⁴² 그렇다고 인권감시협회는 경제제재와 같은 방법이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최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³

이상과 같이 볼 때, 국제사면위원회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원인을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불력 외해, 자연재해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인권감시협회는 북한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면서 인권 침해 원인으로 주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꼽고 있다. 이와 달리 두 단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2005~2006년 들어 비교적 활발한 북한인권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⁴⁴ 국제인권운동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두 단체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과잉정치화된 북한인권 논의를 관망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유엔에서 계속되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의 상황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⁴²-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5* (New York: Human Rights Watch Publications, 2004), pp. 309~314.

⁴³-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인권감시협회 홍보국장 Tom Malinowski의 발언 (서울, 2004. 12. 1);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Ending Food Aid Would Deepen Hunger,” London, October 11, 2006, <<http://www.hrw.org/english/docs/2006/10/10/nkorea14381.htm>>(검색일: 2006. 10. 13).

⁴⁴-2005~2006년 사이 두 단체 본부 인사들이 북한인권관련 자료수집 및 한국사회의 동향 파악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Human Rights Watch는 2006년 5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보고서 “A Matter of Survival: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Food and the Risk of Hunger”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인권감시협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 정치적 접근방법까지 취하고 있다. 2006년 9월 16일 협회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향후 한반도 관련 논의시 북한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⁴⁵

한편, 미국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주관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05년 워싱턴, 서울 대회에 이어 2006년 들어서도 브뤼셀, 로마에서 대회를 갖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북한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오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에서는 납치자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관련 단체와 연대활동도 벌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사와 접근하는 방식은 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인권운동과 다른 차원에서 국내외 인도주의단체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북협력국제NGO회의’를 네 차례 가져왔는데, 2005년 제4회 회의에서는 단순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평화와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⁴⁶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평가해보면 ①반복되는 비판 및 폭로 위주의 접근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고, ②자유권 보호는 북한의 안보논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③북한의 당면한 생

45-서한 전문은 인권감시협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 서한에 서명한 단체는 인권감시협회 외에 미국북한인권위원회, Refugees International(미국), Anti-Slavery International(영국), 북한인권시민연합(한국)이다. <<http://hrw.org/english/docs/2006/09/16/nkorea14198.htm>> (검색일: 2006. 9. 25).

46-대북민간단체협의회,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자료집 (2005. 5. 28~31 북경) 참조. 이외 2006년도 상반기 북한인권관련 국내외 동향은 임순희·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존권, 평화권, 발전권 향상을 위한 움직임은 걸음마 단계에 있고, ④행
위자별 다양한 접근이 조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북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편성 및 자유권 중심의 주류
북한인권 평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피로 현상 등으로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더욱 주목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IV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과제

1. 한국의 위치와 한국정부의 입장

북한인권에 관해 한국이 처한 위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주요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국제사회의 일원인 북한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압박 중심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극심하고 지속적인 식량 및 의약품 부족현상을 외면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권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인권분야 인력 개발을 위해 북한 관리와 교원들을 초청해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을 통한 대북인권정책에 손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나머지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을 인권만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협력의 유지 등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말하자면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시각과 대‘북한’정책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시각 사이에 있는바, 최적의 합리적 입장은 두 시각의 접촉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시각에 서서 북한인권을 접근하는 것은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한국의 합리적 정책 수립에도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의 이 같은 이중적 위치는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한 과거 서독의 정책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고 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독은 동독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독을 향해 공개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대신 국제회의나 제3국을 통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문제제기하거나,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밀거래(Freikauf)를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정책을 전개하여 점진적으로 동독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하였다. 물론 당시 서독 내에서는 동독정부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동독과의 협력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서독정부는 1972년 동독과 기본조약을 맺은 이후 ‘접촉을 통한 변화’를 지향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부터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서독의 경험과 유사한 점이 많다.⁴⁷

47-물론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가령 서독은 동독의 베를린 장벽 설치를 계기로 1961년 11월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들어 동독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반면, 한국은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그 비중적 위치를 무시당한 채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 한국정부는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투표에 불참하였고, 이어 제60~61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국사회에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직전 밝힌 설명문(Explanation of Vote)에서 한국측 대표는 “①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다, ②그러나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③북한은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한국측 대표는 기권 입장을 밝히면서 ①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②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 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 지속, 인도적 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하는 한편, ③북한측에는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할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두 입장 사이에는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진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의 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나아가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

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을 대북정책 전체 틀에서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 등 다른 주요 우선순위와의 조화 속에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은 의제설정, 문제파악, 정책목표 설정을 포함하고 정책집행과정은 정책수단 채택, 정책집행, 정책변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범주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인권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자. 2000년대 들어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탈북자와 함께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와 2004년 10월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 대화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 북한인권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인권 상황 파악은 탈북자 면담과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정보수집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북한인에 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 천명된 것은 2004년 10월 1일이다. 이것은 제59~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두 차례 채택된 이후 정부 입장을 밝히려는 국내외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4년 9월 28일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직후 나온 것이었다. 10월 1일 정부는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에 보고

한 ‘남북관계 주요현황 보고’를 통해 정부의 북한인권관련 ‘기본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의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북한인권 인식,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화되는 북한인권 개선 방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⁸ 여기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인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지만, 그 개선 방법은 한반도 상황에서 연유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여론으로부터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인권의 범주,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정부의 역할과 과제 등 구체적인 입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5년 들어 정부는 위 원칙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었고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시 상정 통과되었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을 두고 여론 분열양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화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해결 촉구, 북한의 식량난·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해외체류 탈북자의 국내입국 적극 추진 등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⁴⁹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도 유사 입법 제정 움직임에 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⁵⁰

⁴⁸-2005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통일부 답변자료, 2005. 9.

⁴⁹-위 자료.

⁵⁰-위 자료.

2005년 정부의 북한인권관련 입장은 이전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우선 북한인권관련 범주를 북한내 주민의 인권, 재외탈북자의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밝히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 북한 스스로의 개선 의지의 중요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인 일부 정당 및 여론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2005년 11월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고 12월 미 행정부 지원하의 프리덤 하우스 주최 제2차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부의 북한인권 입장이 다시금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정부는 11월 17일,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투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 북한의 역할이 각각 있음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이행, 협약이행 감시기구 및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

⁵¹ 정부는 위 3가지 범주 중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면서 이 분야의 우선적인 해결을 기울일 것을 시사하였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측에 이 문제해결을 촉구하여 “협약해결”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인권은 독자적이거나 우선적인 영역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비판적 여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현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집행과정을 살펴보자. 북한인권정책은 내용상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상황 파악 및 여론조성, 국제사회와의 협력, 시민단체와의 협력, 탈북자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개선 촉구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⁵²

첫째,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연구원과 협력하여 『북한인권백서』(국·영문)의 발간 배포, 북한인권단체의 간행물 배포 지원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의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의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정부는 북한 인권단체의 북한인권관련 논의 및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북한인권·난민 아카데미’, ‘북한인권포럼’ 개최 지원이 그 사례들이다.

넷째,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 복송이 되지 않도록 주재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⁵²-2005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통일부 답변자료, 2005. 9.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의 당면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품목 선정, 분배결과 확인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비료 지원시 포장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표기, 분배결과 통보, 매 10만 톤마다 동·서해안 각 두 곳에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하였다고 한다.

여섯째, 정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위원회, 각종 남북대화를 활용하여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근원적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

가. 정책결정의 측면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상황 인식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당면한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 및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 화해협력관계의 정착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일정한 이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³

이상 살펴본 정부의 북한인권에 관한 기본입장과 정책방향은 특수



성론과 점진적·실질적 개선론 등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판단만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은 보편성론에 입각하여 한국이 처한 특수한 환경에 주목하지 못하거나 북한인권을 많은 국제인권 이슈들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담론에 입각한 정교한 설득논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먼저, 정부는 특수성론에 입각하여 북한인권을 생존권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공개적 요구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북한주민의 당면한 생존권 향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유권 신장만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명분으로 북한정권 압박이나 심지어 교체를 주장하는 입장은 협소한 인권론에 입각한 ‘인권 권력정치’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생존권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권에 대한 관심을 유보하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배치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관계를 평화 우선으로 보는 것도 인권 범주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인권 영역간(혹은 인권과 다른 가치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긴장완화와 같은 한반도의 특수 과제는

⁵³- 2005년 11월 방한한 문타폰(V.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 성명(프레지던트호텔, 2005. 11. 10)을 통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대북 식량지원,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부차시하는 근거가 아니라 북한인권의 범주를 재구성하고 개선 방법을 수립하는 데 적극 고려할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편성의 관점 아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인권이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제기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 있게 논의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식량은 물론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 상태에 있고 안보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권과 평화권 등 소위 3세대 인권도 북한의 인권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여야 한다. 이를 인권담론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한다는 논리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실질적 인권개선에도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컨대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기본입장을 국제인권의 4대 원리와 인권 범주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기초할 때, 인권의 보편성을 절대성과 혼돈하고 자유권에 국한한 일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점진적·실질적 개선론은 북한인권정책이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른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전개할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점진적 개선론은 북한인권 개선이 다른 사안의 영향으로 지연되거나 유보될 수 없다는 비판, 실질적 개선론은 북한주민의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는 눈감는 논리라는 비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의 보편성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정부의 정책방향과 그에 대한 비판 모두 적절한 입장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책임은 (북한정부는 물론) 한국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복잡하고 구조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행위자가 그 해결을 도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각 행위자들은 저마다의 여건과 능력 속에서 그에 알맞는 역할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함께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정부와 비정부기구, 한국과 다른 관련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는 모니터링, 인도적 지원과 같은 공통 사업 외에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사안과 탈북자를 주로 다루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탈북자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표 IV-1 참조).

<표 IV-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각 행위자별 역할(예시)

구분	자유권	생존권	탈북자	인도적 사안
한국		공통	○	○
미국, 일본	○		○(미국)	○(일본)
중국			○	
유럽연합	○		○	
인권단체	○		○	
지원단체				

* 유엔 인권기구는 위 사안을 모두 다룸.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역할분담이 각 행위자들 간에 상호 합의되고 그것이 북한의 양해를 획득해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가칭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GO/NGO 세계포럼’ 개최, ②북한인권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대북 인도적 지원, ③북한인권 개선 노력(특히 자유권 개선 사업)이 북한정권 교체가 아남을 표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런 조치들이 북한정부의 인권개선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냉전시대 동서간 헬싱키선언의 성사과정에서 보듯이 북한의 주권 존중을 전제로 한 인적 접촉(human contact) 및 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여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획득과 정책 협조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내용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국제인권 담론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북한인권관련 입장은 ①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에 입각하여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발전권과 평화권 등 북한인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②실질적 인권개선의 관점에서 북한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③북한과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역할분담 하에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지지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처럼 ‘북한’인권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안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당면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같은 경성이슈(hard issue)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은 보편적 문제로서 그 자체로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안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에 정서적 반감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⁵⁴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41~43;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인권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서보혁, “북한인권관련 헬싱키 구도의 적용 가능성 연구,” 2006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참조 (2006. 9. 22).

의 북한인권정책은 그 내용적 합리성을 효과적으로 외화할 수 있는 적합한 형식이 요청된다. 국제인권론에 기초한 북한인권 정책방향의 재구성이 그것이다. 이는 단지 정부 정책의 정당화 작업에 그치지 않고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이행 궤도에 오를 경우 본격화 될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개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의미도 갖는다 하겠다.

나. 정책집행의 측면

한국정부의 현 북한인권정책 집행상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정책내용 범주에 북한내 인권, 재외탈북자,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내 인권에 관해서는 당면한 생존권과 인도적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자유권 분야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분단상황에서 갖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둘째, 정부는 정책수단으로 지원, 대화 등 주로 당근에 의존하는 대신 비난, 이슈연계(issue linkage) 등 채찍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정부와의 직접적인 인권대화보다는 국제기구와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협의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서독의 동독인권정책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서 남북 접촉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계 개선과 인권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책변동과 관련해서 현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고 사안의 특성상 남한 내 정권교체시에도 수정, 보완은 가능해도 정책집행의 종결은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현정부는

북한인권정책을 부드럽고 조용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겠는데 이는 실질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접근방향에 상응하는 정책집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정책집행이 거칠고 시끄러운 반작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정치·행정 일원론에 서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회, 시민사회 일각에서의 비판적 반응은 정책·행정 일원론의 입장에 서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개방성은 물론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⁵⁵ 이런 차이는 북한인권 정책에 있어 행위자간 적절한 관계 설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판단할 내용적 기준으로 효과성과 능률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⁵⁶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북한을 비롯한 다른 행위자들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현 북한인권 상황으로 한국의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의 효과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능률성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정책은 북한인권을 둘러싼 여론 분열, 각개약진식 사업으로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정책 효과성과 능률성이 제한적인 것은 첫째, 정부를 포함한 각 행위

55-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그 근거로 ①정책집행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확정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②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고, ③정책결정만이 아니라 집행활동도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논리는 위와 반대이다. 정정길, 『정책학원론』(서울: 대명출판사, 1994), pp. 470~474.

56- 위의 책, pp. 498~501.

자들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북한의 반응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정책수단이 통합성을 갖고 조화롭게 집행되지 못하는 주체적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대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개선전략 수립 및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의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북한의 반응과 다른 대북정책 분야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논의기구 운영은 정부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원인으로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심각한 입장 대립이 초래하는 높은 기회비용을 꼽을 수 있다. 이 현상은 비단 북한인권정책만이 아니라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앞의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정책 목표가 행위자간에 다양함에 따라 실제 정책집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충돌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째, 셋째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북한 및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과 지향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표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기능적, 실용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정권 교체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성공적 정책집행의 또 다른 판단기준인 몇 가지 절차적 기준도 효과적·능률적 북한인권정책 집행을 성찰할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⁵⁷ 먼저,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정책 목표와 그 수단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 부족과 북한인권관련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 데 기인

⁵⁷ - 정책의도의 실현, 관료적 합리성, 집행관련집단의 요구충족 등을 말한다. 위의 책, pp. 502~508.

한다고 하겠다. 물론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목표 및 주요 수단이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와 달리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정부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북한정권과의 대화중단 혹은 대북 제재에 나서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부 정책으로 전폭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북한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출발은 국제인권론이라는 공통 원칙이지 대북관, 정부에 대한 호감도와 같은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절차적 기준에 전문적 지식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관료적 합리성은 북한인권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필요한 절차적 기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정책이 단순하고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므로 점진적 정책집행 양상을 띠다고 하겠다. 북한인권정책이 원칙적으로 도덕적 정당성과 지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인 북한에 대한 공정한 취급, 정책목표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변경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북한정부에 대한 인식과 북한을 객관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병존할 수 있다. 또 정책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당면한 생존권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정부가 기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준수를 촉구하여 북한의 순응을 유도하고, 그것이 나타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권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자유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개선 촉구 그리고 그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선택 혹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수행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과제 달성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집행 속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V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과 경로는 관련 행위자의 인권관, 여건, 능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상정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장래 전망도 로드맵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⁵⁸ 여기서는 앞의 논의를 반영하여 ①포괄적 인권 범주, ②인권과 다른 사안들과의 상호관련성, ③행위자별 역할 분담, ④북한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표 V-1>(59쪽) 과 같이 4단계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

1. 기본 구도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전제하고 있다. 먼저, 당사국인 북한의 입장과 주요 관련국들의 대북정책에 이슈간 위계

⁵⁸-현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현실 사회주의권의 체제이행 경험과 평화적 이행 기대를 반영하여 단계설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ssue hierarchy)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대외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식량난 해결과 경제재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은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북한인권문제는 입장 차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과제로 보고 있다.⁵⁹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북한 인권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국제인권기준, 민주주의, 평화, 인간안보, 비무장(즉 무장 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⁶⁰ 둘째, 인권의 총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인권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적인 관심사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때 최소한의 기본권이란 생존권과 안전권을 말한다.⁶¹ 셋째, 인권 신장이 모든 국가들의 공통 과제라 할 때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관여국 자신의 인권개선 노력도 동반하는 성찰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한은 북한과 평화공동체 혹은 통일을 추구하고 아시아 인권 증진을 주도하려면 북한인권을 대상화하지 않고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시된 로드맵은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가정하면서 인권개선 단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제 인권개선 과정에서 단계별 시간은 다르게 나타나거나 특정 두 단

⁵⁹-미국은 북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인권, 마약, 위조지폐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⁶⁰-Viti Muntarbhorn,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6.

⁶¹-슈(H. Shue)는 기본권을 이렇게 정의하면서도 생존이 가능해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존권을 더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Henry Shue,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 25.

계가 중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II-IV단계는 권위주의국가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고, I 단계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므로 현실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로드맵은 단계적 포괄접근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다른 사안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청되고, 북한인권 범주가 광범위하고 관련 행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인권 개선 단계는 현상황에서 출발하여 조건 확립기→이행기→완성기로 이어지는데 각단계마다 주요 목표와 변수를 설정하고 관련 행위자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2. 추진 원칙

가. 국제인권 원리 준수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일원이라는 점, 특히 4개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 개선은 보편성 등 국제인권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의 속성을 북한인권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은 절대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특정 인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목표임과 동시에 그 달성 과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견지해야 할 준거이므로,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물리적 방법이나 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나. 인권과 평화의 조화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정신과 한반도의 전쟁 경험 및 군사적 긴장상태의 지속은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소들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평화에 도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북한인권 개선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고, 한반도 평화를 무시한 북한인권 개선 역시 무의미하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나가야 할 동시 과제이다.

다.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한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복무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이고,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은 북한의 인권개선 능력을 높이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당면한 생존권 회복 및 경제개발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 권력 기반의 비민주적인 성격이 인권 보장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⁶²는 지적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인권친화적인 정치제도 및 법치 확립 등 정치적 과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⁶²-Muntarbhorn,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6.

라.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북한 스스로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과정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적절하다. 북한에 대한 우월감이나 적대감을 바탕으로 한 과잉개입은 인권개선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비인권적(심지어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은 최근 국제분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은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지원 수단이지 국제사회가 북한정부를 압박하는 무기가 아니다.

3.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권개선 방안은 각 행위자의 입지와 능력, 선호에 따르겠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이루어내는 것이 추진원칙과 상응한다.

가. 남한

북한인권정책에 있어 남한은 특수한 입장에 있고 이는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남한은 일정 시점까지는 인도적 지원, 각종 남북대화 및 인적 접촉, 탈북자 수용 등의 방법으로 생존권, 탈북자,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북한의 자유권 감시 및 비판 활동을 지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논의하

는 단계에 들어서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개혁·개방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권문제를 공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은 현재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나쁜 경찰(bad co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역할은 북한인권 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병행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다 같이 북한의 자유권분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은 탈북자, 일본은 남북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다. 특히, 정전체제 청산과 대북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매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막중하다.

다. 중국

중국은 북한과 같이 상대주의적 인권관을 갖고 있고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중국은 탈북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국가로서 탈북자 보호 및 정착에 가장 큰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인지 경제 이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체류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국은 또 에너지,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앞장서왔는데 앞으로도 이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할 필

요가 있다.

라.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해왔다. 또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 유엔 인권기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접촉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인권판무관실과 접촉을 거부하는 명분은, 북한이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가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양자의 접촉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또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판무관실은 탈북자와의 면담과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해왔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은 그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임명 역시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방북을 위해 그의 보고서 작성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북한과의 비공개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도 북한인권 개선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바. 비정부기구

국제 인권단체와 인도적 지원단체 등 비정부기구도 북한 인권 모니터링과 생존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인권단체는 북한의 인권을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다루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원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모두 인권인프라 확충을 통해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4. 단계별 추진전략

아래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단계 설정은 목표와 변수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각 단계별 추진전략은 해당 단계의 주요 전략이긴 하지만 누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가령 I 단계 추진전략이 II 단계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용한 가운데 II 단계에 알맞은 새로운 전략이 추가되는 식이다. 그럴 때 이전 단계로의 역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표 V-1>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단계	목표역할 등	목표	행위자별 역할		
		변수	북한	국제사회	남한
I 단계 (현재)	· 생존권 회복 · 평화정착	· 식량 증산 · 분배 투명성 · 인권법제 확립	· 인도적 지원 · 인권상황 모니터링 · 탈북자 보호	· 인도적 지원 · 인도적 문제 해결 · 탈북자 보호	
	· 인도적 상황 · 군사적 긴장상태				
II 단계 (확립기)	· 인권인프라 확립	· 국제인권협약 국내법제화 및 추가 가입 · 군사비 민수전용	· 개발지원 · 인권대화 · 기술협력	· 경제협력 확대 · 남북군축 주도	
	· 평화체제 구축				
III 단계 (이행기)	· 자유권 보호	· 자유권 침해 중단 선언 · 인권교육	· 시민사회 지원(인적·정보 교류, 교육 등)	· 죄동 · 북한인권 거론	
	· 개혁개방 본격화				
IV 단계 (완성기)	· 국제인권규범 전면 이행	· 자유권 실질 보장 · 삼권 분립 · 국가인권기구 수립	· 민주화 이행 지원	· 죄동	
	· 민주화 이행경로				

가. I 단계 추진전략

I 단계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 북한인권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특히 생존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식량부족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북한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난 이후에도 2006년 현재까지 매년 1백

만 통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지원 피로(aid fatigue)’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식량증산을 힘쓰는 한편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오늘날 한반도 안보환경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되어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은 절실하다. 북핵사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북일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수 있고, 그럴 때 북한 인권의 전면적 개선의 길도 열릴 것이다.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전개하고 북한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각기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남한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탈북자 보호에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인권 법제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그러나 I 단계 목표와 변수로 생각할 때 주요 행위자는 북한과 미국으로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평화권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 II단계 추진전략

북한인권 개선 조건 확립기로 부를 수 있는 II단계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인권관련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때 북한의 호응 시점을 판단하는 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II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인권개선을 유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격

적인 경제 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문제와 북한 인권개선은 연계보다는 병행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군축과정에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요구되겠지만 북한인권 개선의 측면에서 볼 때 II단계부터는 북한의 역할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기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협약 추가 가입이나 기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과 국제사회는 공통적으로 경제협력, 개발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은 남북한 군축을 주도해 평화체제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이 사회권 증진에 나설 수 있는 대내자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단된 인권대화 와 인권분야 기술협력을 활성화해 북한이 향후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때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개발이 지속가능한 발전, 권리에 기반한 발전이 되도록 감시와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 III단계 추진전략

III단계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화 한다는 상황 설정 아래 북한이 가장 유보해온 자유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노선을 공식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김정일 이후 ‘개혁정권’이 등장할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북한은 자유권 침해 중단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에 협력하고 개선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강제 받을 것이다. 이때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

선을 위해 연계전략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단계에서 남한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인권을 공개 거론하면서 걸음마 수준인 시민사회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한의 공개적인 북한인권 거론은 체제경쟁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 지원 차원에서 건설적 비판의 방향에서, 남북한 공동의 인권 향상을 통한 한반도 공존공영을 기약하는 성찰적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인적·정보 교류, 인권교육, 인권자료 보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향후 북한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는 역량 구축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권 관련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부터 북한은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되 오랜 사회주의 경험으로 자유권 증진 방안 제시,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국제인권기구는 북한의 자유권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북한정부의 인권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한은 동북아국가들과 함께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추진해 북한인권을 지역인권의 일부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인권과 동북아인권의 동시 향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IV단계 추진전략

IV단계는 북한이 민주화로 이행하는 상황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전면적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법치, 삼권분립 확립,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권위주의정권 혹은 의사민주정권의 등장 가능성에 따라 인권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역할은

계속된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중동부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체제전환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험을 살려 선거감시, 민주주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민주성, 책임성, 참여, 투명성 등을 바탕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나설 수 있는 정치 제도 및 문화 형성에 있어서도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은 필요하다. 이럴 경우 북한 인권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대상이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인권문제의 일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VI 결론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행동 계획 및 그 실제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남북관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등으로 특수한 입장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대북정책 전반의 틀에서 접근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도 인지하는 바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 더 심하다는 점은 하나의 아이러니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특수성론에 입각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낮게 책정해왔고, 실질적 개선론을 펴면서도 사실은 당면한 생존권 회복에 주안점을 뒀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국제인권론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다른 대북정책 사안과 조화를 이루되 그 비중을 상향조정할 때, 실질적 개선론의 전제조건인 국내외적 지지를 높이고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미국, 유럽연합, 국제비정부기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깊

은 관심을 표명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만큼 북한에 실질적 인권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북한정부의 미온적 반응 외에 다른 원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절대주의적 인식, 북한인권에 대한 선별적 판단, 일방적 접근방법은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에 각기 처한 입장과 능력에 알맞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개별적 접근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GO/NGO 세계 포럼’을 제안해본다. 물론 이 포럼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갈등 수준으로 보이는 곳은 한국과 국제사회 사이보다는 한국내 행위자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을 그 자체로 파악하지 않고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성의 부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진보-보수로 분열되어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적·이념적 지형에서 최근 시민단체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새로운 접근이 활력을 가질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의기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북한인권정책을 공동 모색하고 정부·민간의 역할을 조정·분담함으로써 정치적 대립을 지양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행동계획 수립, 단계적 목표 설정 및 그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로드맵 작성 과정 자체가 북한인권을 소재로 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이고 생산

적인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로드맵 작성의 성공 여부는 일차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전략 추진원칙에 합의하느냐, 이차적으로 참여 행위자간 정치적 입장 차이를 버리고 상호존중 속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에 합의하느냐에 의존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북정책 사안들과의 조화 속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동향을 살펴볼 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없지 않다. 정부는 북한인권 정책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켜 결정하고 정책집행 방식을 지금보다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민단체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인권은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할 때 보호되고 증진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본 논의에 관련 행위자를 포괄적으로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수암.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5-13.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임순희·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4.
- 최의철.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5*. Oxford: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5.
- Alston, Philip, and Mary Robinson. ed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s Mutual Reinforce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5*. New York: Human Rights Watch Publications, 2004.
- Lauren, Paul G..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 Ramcharan, Bertrand G..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 Shue, Henry.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Uvin, Pete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2004.

2. 논문

- 김경미. “북한인권 관련 한국사회의 논의 동향 비평.” 『신진보연대』. 통권2호. 2006 봄.
- 김수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통일정책 연구』. 14권 1호. 2005.
- 서보혁. “북한인권관련 헬싱키 구도의 적용 가능성 연구.” 2006년 북한 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9. 22.
- _____. “북한 인권의 이해와 해법.”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정치학 이란』. 서울: 인간사랑, 2005.
- _____. “행위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2005.
- 윤여상. “북한인권운동과 우리의 성찰.” 『황해문화』. 통권50호. 2006 봄.
-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한인권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2003.
- 이금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발표문. 2006년 7월 11일.
- _____.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2004년 12월 1일.
- Alston, Philip.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7. 2005.
- Amnesty International.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AS 24/003/2004. 17 January 2004.

- Bunn, Isabella D. "The Rights to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Economic Law."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5, No. 6. 2000.
- Gutto, Shadrack. "Current concepts, core principles, dimensions, processes and institutions of democracy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odern human rights." Seminar on the Interdependence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ld by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25~26 November, 2002.
- Feffer, John. "To Link or Not to Link: The Human Rights Question in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l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3 November 2005.
- Ford, Glyn. "EU's Policy on Human Rights in DPRK."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l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3 November 2005.
- Hayden, Patrick. "Constraining War: Human Security and the Human Right to Peace." *Human Rights Review*. Vol. 6 No. 1. October~December 2004.
- Rosas, Allan. "The Right to Development." in Asbjorn Eide, Catarina Krause, and Allan Rosas. 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Textbook*.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95.

3. 기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자료』. 서울. 2005.

대북민간단체협의회.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 자료집. 북경. 2005. 5. 28~31.

북한인권국제대회준비위원회. Seoul Summit: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2005.

『연합뉴스』.

인권운동사랑방 외.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 워크숍 자료집. 2005. 11. 30.

통일부. 『200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I · IV. 2005. 9.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12/1/Add.95. 12/12/2003.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5.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State Department. March 8, 2006.

Muntarbhorn, Vitit.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60/306. 29/08/2005.

“Promotion of the right to democracy.”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57, E/CN.4/RES/1999/57. 28/04/1999.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S/60/173. 16 December 2005. UN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RES/2004/13. 15/04/2004.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RES/2005/11, 14/04/2005.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m.” Released by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11, 2005.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CONF.157/23. 12 July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4-25 1993. Vienna, Austria.
<<http://hrw.org/english/docs/2006/09/16/nkorea14198.htm>>.

<<http://sarangbang.or.kr>>.

<<http://www.un.org/millenniumgoals>>.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룡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명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충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지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장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 품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남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해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 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 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비매 품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